

 보다나은 식약처	<h1>보도자료</h1>	배 포	2019.3.19.(화)
		담 당 과	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(☎043-719-2505)
과 장		오금순 (☎043-719-2501)	
연 구 관		조태용 (☎043-719-2505)	
 식품의약품안전처			

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거품(휘핑크림)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(카트리지)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개정안을 3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
-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▲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▲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
-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.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,
 -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.
 - 다만,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,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, 업체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

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식품업체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습니다.
-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법령정보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5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<첨부> 1. 아산화질소 관련 Q&A
2.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안) 주요내용

<첨부 1> 아산화질소 관련 Q&A

Q 1) 아산화질소(N₂O)란?

- ☞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,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, 고체 모두 무색이며, 물,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,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,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.

Q 2)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?

- ☞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,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, 코, 목을 자극하여 기침, 호흡곤란, 어지러움, 졸림을 유발하고,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.

Q 3)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?

- ☞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,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.

Q 4)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☞ '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☞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취급·관리되는 고압가스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Q 5)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·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?

☞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* 전에 2.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·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
* 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후 1년간 시행 유예할 예정입니다

☞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 제조·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도 가스용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Q 6)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요?

☞ 고시개정 이후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의 대체제로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또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
<첨부 2>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(안) 주요내용

1.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

품 목 명	개 정 내 용
아산화질소	<제조기준> ○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.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야 함 * 시행시기 : 고시일로부터 1년 후

2. 미생물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

적용 대상	개 정 내 용
미생물 등 배양용 식품첨가물	<사용가능 식품첨가물> ○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식품첨가물 ○ CODEX에서 미생물 영양원으로 등재된 물질 <사용기준> ○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나, 잔류하는 경우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3. 천연향료 원료물질 목록 정비

품 목 명	개 정 내 용
천연향료	○ Amberggris 등 59종에 대한 국문명칭 추가 및 학명에 대한 오타자 등 수정

4. 시험법 개선

품 목 명	개 정 내 용
수용성안나토, 비타민B12, 보존료제제	○ 시험법 중 벤젠, 사염화탄소 등 고독성 시약을 에탄올 등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
L-글루탐산, L-글루탐산암모늄, L-글루탐산칼륨 살균소독력 시험법	○ 정밀한 방법으로 대체 및 시험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